

최인훈 『광장』의 법의식과 시민적 윤리*

홍 순 애**

요 약

본 연구는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나는 법의식과 시민적 정체성의 변모 과정을 통해 4.19 전후 법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광장』에서 남한의 권력에 의한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 상실은 국가주의적 법 제도에 대한 회의와 모순을 인식하는 계기되고, 북에서의 자기처벌의 유사법적 장치인 자이비 판은 죄가 없이 처벌되는 해계모니 폭력의 대리자로 인식된다. 이에 남과 북의 냉전 이데올로기 안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법의 불완전성은 중립국 선택 이유가 된다. 이명준의 미송환포로 신분은 전후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국적이 불확정적인 '예외상태'로 제시된다. 중립국은 냉전체제의 국가이데올로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됨으로써 탈국가적인 자기인식의 계기가 되지만, 법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삶이 가능하지 않음을 예견함으로써 죽음으로 귀결된다.

소설에서 중립국 선택은 국가법-폭력의 도식이 지속되는 냉전과 반공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제2공화국의 대한 알레고리로 작동된다. 『광장』은 법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정체성의 구축이 냉전과 반공체제라는 전후 현실에서는 가능할 수 없고, 시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각성과 자발적 지성의 활동에 의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설은 이명준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시민의 법적 지위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거세되는 상황과 중립국 미송환포로로 전락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근대 국가체제를 회의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광장』은 개

* 본 논문은 2015년도 동덕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쓰인 논문입니다.

**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적 제도, 법적 장치가 근대 시민의 존립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4.19와 연계된다. 냉전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법제도의 무위성과 이러한 법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했던 한 인간의 서사가 『광장』인 것이고, 이에 소설은 민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법의 윤리성, 법적 정의의 쟁취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법제도와 시민적 정체성의 구성문제는 4.19의 전후 현실에서 유의미했다고 하겠다.

주제어: 법의식, 시민, 냉전 이데올로기, 반공, 예외상태, 중립국

목차

1. 서론
2. '민권'에 대한 인식과 자아비판의 유사 법적장치
3. 법적 주체의 포기과 중립국의 딜레마
4. 결론

1. 서론

1960년대 문학은 4.19의 자양분으로 성장했고, 이전 시대와는 다른 지향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혁명은 한국사회의 전후 반공 이데올로기와 계층구조, 문화적 구조 등의 변모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배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근대화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외적인 국면들은 물론 민권에 대한 내적인 인식의 계기를 마련한 것 또한 4.19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혁명의 경험으로 촉발된 근대적 주체로서의 각성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이 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학적 근대성을 성취¹⁾할 수 있었다. 이에 근본적인 문학 이념과 방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1960년대 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하지만 1960년대 문학을 논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혁명이 정치적 제도의 문제, 특히 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법 질서의 유지에 있다면 4.19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헌법 제도에 대한 시민 해석의 결과였고, 권력에 의해서 법이 집행되는 과정, 비법적 차원에 대한 인식의 표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의 동기는 단순하게 이해타산이라고 하는 최하위 단계에서 출발하여 인격과 그것의 윤리적 생존 조건의 주장이라고 하는 이상적 투쟁 단계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최종 단계인 정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관점에 까지 이르게 된다²⁾고 언급한다. 법이 폭력 자체라는 것,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의 불신이 가져온 권리적 차원의 저항, 법에 대한 불복종이 4.19였다면, 이러한 법이 갖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는 문학의 영역에서 해명할 문제이기도 하다.

법률들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이기 때문에 정당하다³⁾는 데리다의 논의는 법이 정의를 목적으로 하지만, 법집행

1)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49면.

2) 루돌프 폰 예링, 윤철홍 옮김, 『권리를 위한 투쟁』, 책세상, 2009, 151면.

3) 자크 데리다, 진태원 옮김, 『법의 힘』, 문학과 지성사, 2004, 28면.

데리다는 법을 항상 허가된(autorisé, 권위를 부여 받은) 힘이라고 정의하며, 힘이 없이는 법도 없다는 칸트의 언급을 인용한다. 적용 가능성 없이는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힘이 없이는 어떠한 법의 적용 가능성이나 '강제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법을 정의로부터 구분하고 있고, 법들은 법들인 한에서 정당하지 않고, 우리가 법들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종한다고 언급한다. 법은 '권위의 신비한 토대'이며, 법은 적법한 허구들을 갖고 있고, 이 허구들 위해 자신들의 정의의 진리를 정초한다. 데리다는 두 가지 법적 폭력Gewalt을 설정하는데 첫 번째는 법을 설립하고 정립하는 정초적 폭력die rechtsetzende Gewalt(법정립폭력)이고, 두 번째는 법의 영속성과 적용 가능성을 유지하고 확증하고 보장하는 폭력die rechtserhaltende Gewalt(법보존적 폭력)이다. 여기에서 게발트Gewalt는 합법적 권력의 우월성이나 주권성, 허가하거나 허가되는 권위, 곧 법의 힘을 의미하고 있다.

과정에서의 가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데리다는 법의 힘, 법적 힘과 우리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폭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정당한 힘 또는 비폭력적인 힘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그는 정당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정당하며, 가장 강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파스칼의 언급을 인용하며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하고, 강제할 힘을 갖지 못한 정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데리다는 법이 갖는 정치적,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법과 폭력에 대한 기존의 정치철학의 이율배반을 해체한다.⁴⁾ 법 제도가 정의의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이러한 논의는 법률 자체가 갖는 문제성 보다는 법 집행자의 윤리적, 도덕적 자질의 차이가 법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이 허가된 강제력이고 합법적 권리라고 언급한 벤야민의 논의⁵⁾와 유사하다. 벤야민은 정의의 명분 아래 행해지는 강제력의 불법적, 폭력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법이 기득권 세력의 특권을 은폐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으며, 법에 의한 강제력은 제어될 수 없음을 우려한다. 법이 갖는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이율배반적 충돌은 법 상황이 갖는 모순적 지점이다. 법 집행이 갖는 폭력적 속성, 법 자체의 원천이 폭력이고, 국가만이 법이 내재한 폭력을 독점하고 정당화한다는 이러한 논의는 무릇 1960년 4.19 촉발 원인과도 겹쳐진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문학사에서 최인훈의 『광장』 만큼 주목을 받은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소설은 4.19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며, 1960년대 문학의 새로운 변곡점으로서 인정된다. 문학사에서 『광장』이 지속적

4) 자크 데리다, 앞의 책, 26면.

5)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외』, 길, 2008.

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역사적 현실과 개인의 주체 형성의 국면을 1950년대 전후 상황과 1960년대의 4.19 혁명의 감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일 것이다. ‘저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⁶⁾’으로 인해 『광장』의 탄생이 가능했고, 현실의 관념화라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벽 속에 폐쇄되었던 전후 소설의 한계를 ‘일거에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⁷⁾ 할 수 있었다. 백낙청은 『시민문학론』(1969)을 통해 『광장』이 “내성적인 주인공의 회상을 빌린 우회적 수법으로나마 분단된 한국의 현실을 사실대로 그리고 소신대로 비판하려는 시민적 책임감에서 1960년대의 한국소설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리얼리즘의 성과⁸⁾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사적 상황과 작가의 실천적 태도의 연관관계를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광호는 『광장』이 광장/밀실, 사랑/이데올로기, 몸/마음의 관념적 구조에 대한 탁월한 탈주의 정치성⁹⁾을 보여주었고,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의무로서 지워질 사랑의 운명¹⁰⁾을 보여주고 있다고 논의함으로써 2010년 개정판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있다.

최인훈 소설을 법과 연결시키고 있는 김윤식은 그의 문학이 ‘재판받기’, ‘자아비판’, ‘심판’ 등의 정신적 상처에서 비롯되었고, 자아비판의 공포 대상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열망이 작가(글쓰기)에로 나아가게 한 것¹¹⁾이라고 평가하며, 최인훈 소설과 범의식의 관계망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들에 법과 문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설혜경은 최인훈 문학이 상징적 법과 주체의

6) 최인훈, 『서문』, 『광장』, 문학과지성사, 2010, 21면.

7) 김윤식, 정호웅, 『현대소설사』, 예하, 1993, 348면.

8)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여름호, 창작과 비평사, 1969, 500면.

9) 이광호, 『광장, 탈주의 정치학』, 『광장/구운몽』, 문학과 지성사, 2010, 416면.

10) 김병익, 『다시 읽는 『광장』』, 문학과지성사, 2010, 384면.

11) 김윤식, 『유죄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 최인훈 장편소설 『화두를 중심으로』』, 『현대문학과의 대화』, 서울대출판부, 1994, 22-23면.

분열을 그려냄으로서 억압하면서 욕망하게 하는 법의 메커니즘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¹²⁾고 언급한다. 이평전 또한 최인훈이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보편성을 구현한다고 가정되는 공적인 법의 내부에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균열과 결여의 지점을 발견하고 있다¹³⁾고 설명함으로써 1960년대 최인훈 소설의 법의식의 중층성을 살피고 있다. 이 논의들은 최인훈 소설을 법의 의미망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인훈 문학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 「광장」에 대한 내용은 소략하게 제시되고 있다.¹⁴⁾

4.19를 경험한 결과로서 득해야 하는 인간 존재 양태의 문제는 권리, 법의 제도적 측면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4.19를 전후로 하여 법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법의식¹⁵⁾은 소설에서 어떻게

-
- 12) 설혜경,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법과 위반의 욕망」, 『현대소설연구』 45호, 현대소설학회, 2010, 44면.
- 13) 이평전, 「1960년대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법의식’연구」, 『인문논총』 34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33면.
- 14) 최인훈의 「광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데올로기, 전쟁, 분단현실에 대한 연구들은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의 다양한 논점들을 보여준다.
강주현, 권성우,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인식양상」, 『한민족문화연구』 53집, 한민족문화연구, 2016/ 손유경,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만주의 ‘항일 로맨티시즘」, 『만주연구』 12, 만주학회, 2011./ 김진규, 「선을 못 넘는 ‘자발적 미수자’와 선을 넘는 ‘임의의 인물- 최인훈의 「광장」과 훗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34, 상허학회, 2012./ 오윤호,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경험과 감성의 위치 : 최인훈 초기 장편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3, 대중서사학회, 2017.
- 15) 리츨러Riezler는 범감정을 1)현재 무엇이 범인가에 대한 감정(실증적 범감정), 2) 법이 무엇이여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이상적 범감정), 3) 법에 일치하는 것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보편적 범감정)으로 구분했다. 범감정이 법적인 것에 대한 가치 감정, 법률문제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정의된다면, 이에 비해 법의식은 법에 대하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규범의식, 인식형성에 접근 가능한 모든 토대를 포괄하는 ‘일정한 사고와 성찰을 거쳐 의식된 심리작용’으로

드러나는가. 이 시기 법, 윤리, 정의, 권리는 어떻게 사유되고 서술되고 있는가. 이에 본 연구는 최인훈 초기 소설인 『광장』에 재현되는 법의식과 시민적 정체성, 윤리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960년 11월 『새벽』에 게재된 최인훈의 『광장』이 4.19 전후의 혁명적 분위기를 체현하는 텍스트라는 점, 법 감정을 넘어 법의식의 차원으로 법을 사유하고 있다는 점, 시민의 법적 주체 문제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현실과 개인이라는 미적 주체로서의 일면이 어떻게 법의식을 통해 드러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광장』과 최인훈 문학이 갖는 문학법리학적 의미망을 확장하고자 한다.

2. ‘민권’에 대한 인식과 자아비판의 유사 법적장치

『광장』은 이명준의 월북 과정, 전쟁을 통한 월남의 경험이 하나의 서사로 제시되고, 중립국을 향한 타고르호에서의 경험이 또 하나의 서사로 제시된다. 소설은 타고르호에서의 현재와 중립국을 선택하기 이전의 과거가 교차반복 된다. 이러한 서사적 장치는 이명준의 사유에 있어 꺾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는 과거, 현재의 시간적 혼합을 통한 플롯구성의 미학적 측면을 보여준다. 과거로 제시되는 육상에서의 사건과 현재로 제시되는 해상에서의 사건은 이 소설에서 국가와 비국가의 경계로 나누어지고, 이것은 법적 주체와 비법적 존

정의된다. 법의식은 숙고하는 인간으로서의 차원, 정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표상을 획득하기 위해 그러한 착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법감정이 법의식의 씨앗이며, 법감정이 의식화되어 사유의 명료성을 얻었을 때 법의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해정, 『법감정(法感情)의 인식론적 가능성 연구』, 『법학논총』 26,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재라는 이분법을 성립시킨다. 이 장에서는 과거로 제시되는 남과 북의 지리적 정황에 따른 이명준의 법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에서 이명준의 법의식은 냉전체제의 국제정세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국내정치의 정황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이것은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법 체제의 불완전성과 식민지 법의 계승에 그 원인이 있다. 사실,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한반도의 통치는 법적인 측면에서 대륙법인 영미법의 도입과 식민지 법의 현상유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1945년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21호로 일제하 법률 등을 존속시키고 조선 내 한국인재판소를 ‘군정재판소’로 개편하는 작업을 단행(11월2일)하기 시작하여, 1946년 군정청 법무국이 사법부로 승격(3.29), 김병로의 군정청 한국인 최초의 사법부장 임명(6.27), 1948년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5.10),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공포(7.17),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7.20)되면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탄생되었고, 이어 미군정이 폐지(8.15)되었다.¹⁶⁾ 그러나 여전히 사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식민지법을 승계할 수밖에 없었고, 법의 탈식민화와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전쟁을 거치면서 냉전과 이승만 정부의 반공이데올로기가 고착화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법적 강제성은 확대되었고, 민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는 유명무실화되었다.

1958년 반공청년을 빙자한 테러단이 법원을 난립하는 사건이 발생, 진보당사건 판결에 항의하여 시위 난동을 벌였고, 국회가 국가보안법 등의 27개 의안을 날치기 통과(12.24)하면서 법질서 문란과 혼란이 지속되었다. 특히, 1959년 『경향신문』의 ‘여적’ 필화사건¹⁷⁾

16)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17) 1959년 2월 2일자 『경향신문』〈여적〉 칼럼 내용이 반정부적이라는 문제로 일어난 필화사건. 당시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폭력혁명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것이 아닐뿐더러 혁명유발을 권고한 것도 아닌 것이라고 평가하며, 본 수사에 대해 석연치 못한 점이 많다.”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은 1950년대 말 권력에 의한 최대 언론탄압사건으로 각인되면서 법의 강제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오게 된다. 1959년 4월 『경향신문』 칼럼 ‘여적’이 형법 제 90조 2항 위반(내란선전)했다는 명목에 의해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군정법령 제 88호에 의해 폐간 명령이 내려진다. 이승만 정권 말기가 되면서 반공사법, 정치사법이 정점에 이른 시점에서 법원과 검찰 수뇌부는 정권의 의도에 부응하면서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고 관료적 지배를 고수¹⁸⁾, 심지어 권력에 아부하는 형상을 연출하게 된다. 또한 이승만의 하야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대법원에서 정간처분 효력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경향신문』은 복간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권력에 의한 법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법이 권력에 의해 함범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상황과 민권에 대한 성찰은 『광장』을 통해 재현된다. 4.19의 변혁 안에서 최인훈은 『광장』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 인간으로서의 존재론을 서사화 한다. 그리고 소설은 6.25 전후라는 시간과 남북의 지리적 방향에 따라 이명준의 법의식이 변모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경찰서를 나선다. (중략) 셔츠 앞자락이 온통 피투성이고 보면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몰골을 한 채로 돌아가고 그를 내보낸 형사의 처사가, 언어맛을 때보다도 더 분했다. 한 사람 시민이 앞자락에 핏물을 들인 채 경찰서 문을 나서는 걸 그들을 꺼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략) 나는 법률의 밖에 있는 건가. 돈과, 마음과, 몸을 지켜준다는 법률의 밖에 있는 어떤 길. (중략) 그는 발을 움직여 개미를 비벼 죽인다. (중략) 아니 아까 그 형사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법률이 있다. 시민의 목숨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다뤄질 수는 없지(중

신상초, 『논단- 경향신문의 필화사건』, 『동아일보』, 1959.2.7.

18)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879면.

략) 돈과 마음과 몸을 지켜준다는 ‘법률’ 밖에 있는 어떤 삶. 그는 번 듯 드러놓는다. (중략) 법률이 그렇게 말한다.¹⁹⁾

S서에서의 합법을 가장한 권력의 폭력은 ‘민권’이 보호되지 않는 무법적 상태를 보여주며, 반공이데올로기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월북한 공산주의자 아버지 때문에 이명준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경찰관들에서 폭력을 당한다. 이명준은 S서에 세 번 호출되고, 월북한 아버지와 내통한 ‘협의자’가 되어 자백을 강요 당한다. 국가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공법에 의한 호출로 이명준의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목살된다. 죄는 법을 위반했을 때만 명명되며, 법은 죄를 위반하기 전에는 현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명준은 죄명이 없는 상태로 처벌대상이 된다. 유사 범정의 장치는 혐의를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판결이 지연되고, 이것은 이명준이 법과 시민권에 대해 재인식하게 한다.

소설에서 시민권에 대한 인식은 4.19의 자장 안에서 사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매체에서는 ‘民權復活의 榮光’ (『경향신문』 1960.4.29), ‘민권의 승리’ (『동아일보』 1960.4.20))등을 통해 ‘민권’ 쟁취가 혁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혁명 이후 6월15일 헌법 개정으로 법 개혁이 진행되면서, 사법행정에 대한 쇄신작업들이 추진,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편향과 종속성을 시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²⁰⁾ 또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의해 민권 쟁취의 중요성과 민권 복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즉, 4.19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형식상으로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탈된 공민권과 정치적 민권을 되찾자는 시도²¹⁾였다고 볼 수 있다. 팔봉은

19) 최인훈, 『광장』, 문학과 지성사, 2015, 79-82면.

20) 문준영, 앞의 책, 879면.

21) 김동춘, 『시민권과 시민성- 국가, 민족, 가족을 넘어서』, 『서강인문논총』 37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16면.

『民權의 奪還 - 앞날을 위하여』(『동아일보』)를 통해 4.19가 민권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馬山事件으로부터 시작해서 四.二六 戒嚴下 데모에 이르기 까지 四十日間의 期間은 이 나라 백성이 아무한테서도 짓밟히지도 않겠다는 民權分娩의 鎮痛期였다고 나는 본다. 그러면 四.二六을 民權誕日로 가정하자.(중략) 市内要處要處에 깡패를 기르고 - 정부라는 이름으로 딸라 장사를 하고 法律案審査는 날치기로 하고 反對黨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룻밤사이에 警備員을 三百명이나 늘리어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무뎌내듯 이 反對派를 議事堂으로부터 뽑아낸 뒤에 一方的으로 多數를 방패삼아 통과된 法律이라하고 토요일에 否決宣布된 改憲案이 月曜日에 가서는 四捨五入으로 可決된 法律이라고 宣布도 되고 國會議員을 가두기 위해서 戒嚴令을 내린 뒤에 造作된 民意로써 議事堂을 포위케 한 후 拔萃改憲이라는 改憲도 하고 죽을 罪囚도 白晝에 闊步케하며 죽을 罪 없는 者도 死刑하는 등 不法, 無法, 暴力, 欺瞞의 ‘惡의 뿌리’는 李 대통령의 下野 성명으로써 지금 보기엔 우선 除去되어질 것 같이 보여진다.²²⁾

팔봉에 의하면 8.15 해방이나 대한민국정부수립은 타자에 의한 수행이었기에 민권의 탄생이 지연되었고, 마산사건이 민권 탄생의 계기가 된다. 인권의 존엄, 개성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청년학도들의 애국정열로 4.19가 가능했고, 이로써 민권은 시민의 힘으로 획득된 것으로 의미화 된다. 민권의 쟁취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법률안 심사의 날치기, 일방적 법률 통과, 사사오입의 법률 선포, 발췌개헌 등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위반에 대한 정치에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은 불법으로부터 법질서의 옹호, 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행위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950년대가 민권의 진통기라면 4.19는 민권의 탄생된 역사적 기념비인 것이고, 이러한 ‘민

22) 김팔봉, 『民權의 奪還 - 앞날을 위하여』, 『동아일보』, 1960.4.28

權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헌법, 법적 인간으로서의 시민을 재규정하는 작업에 다름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소설에서 S서에서의 민권에 대한 유린은 법이 정당성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아닌, 권력의 폭력 하에 집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국가단체나 정당 등의 조직과 활동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내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혐의자가 되고, 내란 음모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조항과 함께 목적, 결사, 집단을 구성하거나 혹은 가입 또는 선동, 선전 내지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²³⁾에 의해 조사 대상이 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공권력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폭력에 시민의 권리는 전면적으로 부정당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명준은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된다. 자의적인 법 적용에 의해 시민의 법적 지위가 상실되는 과정을 통해 이명준은 법 집행의 오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냉전의 분단체제라는 역사적 사실로 정당함을 보장받은 법은 죄가 없이 처벌되는 과정에서 현현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의 폭력의 대리자로 등장하고, 이것은 이명준의 체험을 통해 인식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광장 없음으로 규정됨으로써 월북을 단행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법에 대한 회의는 『GRAY 구락부 전말기』에서도 서술된

23) 국가보안법은 단독정부수립직후 내란행위방지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법이다. 혼란한 해방정국과 신생국가 건설초기 정권 반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에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제정과 동시에 수많은 정치범을 양산하면서 국가보안법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에 반공이데올로기 형성에 법적 기제로 뿌리내리게 된다. 1948년 12.1 법률 10호로 국가보안법이 좌익공산분자를 박멸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제정된 이후 1949년 1차,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 '내란행위방지법'으로 불리던 것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명명되었다. 1949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검거 투옥된 사람만 118,621명 이었고, 1950년 4월까지 총 32,019명이 체포되었으며, 9~10월 사이 132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정선미, 『1949~1950년 국가보안법 판례분석-부산지방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37, 부경역사연구소, 2015, 183-184면. 참조.

바 있다. 소설에서 구락부는 무정부주의와 테러리즘을 내세우는 비밀결사의 혐의로 감시의 대상이 되는데, 현은 구락부의 일원들이 불온서적을 읽고 국가를 전복할 의논을 한 것으로 P서에 연행되면서 경찰관들에 의해 폭력을 당한다. 소설은 구체적으로 결사에 대한 사찰과 비법적 상황에 대한 서술을 자제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권력의 불법적 취체 현실을 제시한다. 자기혐오와 시대적 불안을 집단결사로 극복하려는 의지는 P서로의 연행으로 포기되지만, 여기에서 작가는 취체의 경험이 주는 현실적 무력감을 사랑이라는 순수한 내면성으로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에 대한 회의와 의심은 이명준이 월북을 단행하는 하나의 이유로 제시됨으로써, 월북 후 소설은 법 체험이 주요하게 서술된다. 이명준은 북에서도 “혁명의 공화국에 사는 열기 띤 시민의 얼굴”은 찾아 볼 수 없었고 “혁명이 아닌 혁명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 단지 “앵무새처럼 구호만 외칠 뿐”인 광경을 목도하고 “인민이란 양떼”, “꼭두각시”, “각아 놓은 장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개인적인 욕망이 터부로 되어 있는 고장”이기에 인민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남한 S서의 유사 범정은 북에서 자아비판의 형식으로 다시 반복된다.

전체 인민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마당에, 이명준 동무는 전혀 자신의 주관적 상상에 기인하는 판단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중략) 잘잘못간에 한번 윗사람이 말을 냈으며, 무릎 꿇고 머리 숙이기를 억박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짜증 끝에 성냄, 미움에 일그러진 사디스트의 얼굴이었다. 명준은 문득 제가 가져야 할 몸가짐을 알았다. 빌자, 덮어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의 생각은 옳았다. 모임은 거기서 10분 만에 끝났다. (중략)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사람은 우상 앞에서만 운다. 명석 없이는 못하는 지랄도 있던 것이다. 이제 명준에게 남은

우상은, 부드러운 가슴과 젖은 입술을 가진 인간의 마지막 우상이었다. 오늘 일로 하여 그는 절박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²⁴⁾

이명준은 자아비판이라는 형식에 의해 소부르주아적인 인텔리 근성을 비판받게 되는데, 이것은 소규모의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진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반동적 사상을 지닌 자로 지목된다. 그는 인민공화국의 법이 사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권 및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²⁵⁾는 것을 깨닫는다. 당의 규범에 개인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전체주의 체제는 북한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그리고 당의 규범은 정의로운 것이라는 선협적 당위성 안에서 존속한다. 자아비판이라는 유사 법적장치는 주체에게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규범의 내면화를 강요한다. 자아비판이라는 이해할 수 없고 불확실한 법의 명령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폭력이며 동시에 그것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이다.²⁶⁾ 자아비판에 의해 전체주의를 수용하는 주체는 법 존재의 폭력성을 또 한 번 각인하게 된다.

최인훈 소설에서 자아비판의 서사는 『회색인』에서도 재현된다. 『회색인』에서 준은 소부르주아적인 나쁜 버릇을 물려받았다는 것으로 소년단 지도원 선생에 의해 자아비판을 당하게 되고 이것은 유사 재판과정으로 진행된다. “평소에 비열성적이며 낙후한 사업태도를 가지고 임해 왔으며, 역사시간에는 부르주아적인 말을 하여 역사의 참다운 정의를 알지 못하면서 과오를 범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자아비판회가 열린다. 그리고 이것은 “고문”으로 인식된다. “검검한 교실에서 촛불을 켜놓고 아버지가 왜 월남했으며 매부는 어디로

24) 최인훈, 앞의 책, 146-147면

25) 김명주, 『국가법- 폭력에 대한하는 아이러니와 유머의 정치학- 들뢰즈의 '문학 철학'에 나타난 법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1권 4호, 2010, 107면.

26) 이평진, 앞의 논문, 48면.

갔는가, 그들이 집에 있을 때 준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준의 생각은 어떠한가”²⁷⁾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은 법정의 피고의 상황과 흡사하다. 피고인이 언표행위 주체의 수준에서 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²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죄의식”을 느끼는 자아비판의 상황은 소설에서 하나의 상흔으로 기억되고, 이것은 끊임없이 현실에서 다른 형태로 재생된다.

북에서의 법은 국가제도의 일부로서 정의라는 차원에서 시행되며, 주체의 인정투쟁은 실현되지 않는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여기에서 권력에 의한 자기타협의 자발적 복종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법 앞에서의 자발적 복종으로 인해 인민은 양떼, 앵무새, 장승의 존재로 추락하게 되고, 속물적인 인간으로 살기를 강요당함으로써 체제를 부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진리를 탐색하는 계기가 된다. 남한의 S서에서의 법 폭력에 대한 회의는 북에서의 인민재판을 통해 상기되고 있고, 이것은 법에서 소외되는 인민을 발견하는 성찰적 과정으로 진행된다. 인민, 시민으로서의 주체적 삶이 법적 정의의 차원에서 거부됨으로써 또 다른 우상은 발견되며, 그것은 소설에서 은혜로 표상되고, 『GRAY 구락부 전말기』에서는 키티를 욕망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소설에서 6.25 전쟁은 비법적 차원의 또 다른 폭력으로 주체에게 각인되는데, 남과 북에서 이명준이 법의 피의자의 역할을 했다면, 전쟁 중 S에서는 죄를 묻고 판결하는 심판자로 등극하게 된다. 전쟁 중 이명준은 인민군을 따라 종군기자로 서울에 남하하게 되고, 이전의 S서 지하에서 태식, 윤애와 조우하게 된다.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의 S서 지하실의 상황은 자아비판을 주도하는 재판의 형태를 띠

27) 최인훈, 『회색인』, 문학과 지성사, 2016, 52면.

28) 설혜경, 앞의 논문, 212면.

다. 인민군 시설을 찍었다는 이유로 태식을 심문하는 과정은 이명준이 점령군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법의 초월적 사태가 무력으로 지탱되는 상황이기때 태식은 죄인으로 명명된다. “값이 있어서만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행동할 수 있다”는 이명준의 말은 태식을 심문할 자격, 법이 갖는 권력에 대한 전체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이명준은 태식을 단죄하며 “나를 구속할 죄를 내 손으로 만들겠어. 자네 부인이 2층 내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도 나의 새 탄생을 도와야 해”라며 폭력으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법의 공백을 만들어짐으로써 초법적 상황이 도래되고, 이것은 정의적 차원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법의 정당성, 민권에 대한 정의가 역전된 상황은 이명준이 법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법 집행자의 가치에 의해 차별적으로 집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중립국을 선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1989년 개정판에서 태식을 향한 신체적 구타, 고문, 윤애의 성적 유린에 대한 묘사는 십 페이지 가까이 서술된다.²⁹⁾ 그러나 2010년 개정판에는 전쟁 중 이명준과 윤애, 태식의 조우가 꿈으로 처리됨으로써 이명준의 폭력은 약화된다. 여기에서는 수용소에서 무서운 꿈을 꾸는 것으로 서술되며, 태식의 심문과정이 축소되고, 윤애의 성폭행 과정이 삭제된다. 최인훈은 2010년 개정판을 내면서 “주인공의 그 당시 마음과 바깥세상의 관계가 좀 더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하기”³⁰⁾ 위해 개작을 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내 손을 피로 물들이겠어”, “그 찢어진 모랄의 집에 불을 지르겠단 말이거든, 그래서 범죄인이 되겠어.”, “너는 악마도 될 수 없다?”고 소리치며 “도어에 탕탕 머리를 부딪치며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자기분열증의

29) 최인훈, 앞의 책, 144-153면.

30) 최인훈, 앞의 책, 7면.

서사는 2010년판에서 삭제됨으로써 이명준의 폭력적 행위의 내용은 축소된다. 이러한 과정이 꿈으로 제시되고 있는 2010년 개정판은 법의 이중성, 즉 법 폭력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이명준의 모습을 약화시킴으로써 중립국을 선택하는 동인이 조금은 설득력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다.

『광장』은 근대적 법제도 하에서 시민의 정체성과 민권을 획득하고자 하지만 반공규율사회인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법 집행이 폭력적으로 자행됨으로서 법에 대해 회의하게 된다. 북에서의 전체주의적 법 집행은 자아비판이라는 유사 법적 장치에 의해 혁명을 흉내내는 형태로 자행됨으로서 시민으로서의 법적 주체구성은 성취되지 않는다. 즉, 시민적 정체성, 시민권을 법 제도적 측면에서 획득하고자 했던 주체의 시도는 실패로 귀결된다. 이에 전쟁 중 정의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법의 허위성을 스스로 체감함으로써 주체는 현실에서 법적인간으로서의 실존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법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은 남한과 북한의 국가적 체제를 거부하고 중립국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3. ‘법’적 주체의 포기과 중립국의 딜레마

『광장』에서 타고르호의 서사는 이명준의 남과 북의 지리적 여정의 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중립국을 선택한 무국적자로서 이명준의 심리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 소설은 타고르호에서 석방자들의 폭동을 시작하는 시점과 이명준이 포로수용소에서 송환 결정을 하는 시점을 교차 서술함으로써 송환 결정에 대한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타고르호의 서사는 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이야기

이면서 “석방자들이 제 나라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낯선 땅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제 나라에서 쫓긴 수난자”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전쟁포로로서 조국을 포기하고 새로운 국적을 획득하려는 32명의 수난자들은 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법의 진공상태 속에서 통제된다.³¹⁾ 어느 국가의 법도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 타고르호이고, 이곳은 법에 대한 ‘예외상태’로 존속하는 곳이다. 또한 중립국 인도로 향하는 전쟁포로, 즉 미송환포로의 신분은 여기에서 전후 국제법에 의해 국적이 불확정적인 ‘예외상태’로 제시된다. 미소의 대립으로 인해 포로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해석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포로는 정치적 망명권이 부여된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개인이라는 미국식 자유주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개념으로 수렴하게 된다.³²⁾ 즉, 전쟁포로는 제네바 제3협약 제4조에 의한 포로규약에 의해 명명된 전시법의 법적 대상으로 설정되며,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다.

『광장』은 미송환전쟁포로의 중립국행 여정을 서술함으로써 휴전

31) 전쟁포로를 다룬 소설은 강용준 『철조망』, 『멀고 긴 날들과의 만남』, 『사월산』, 손영목 『거제도 1-2』, 이진숙 『거제도 포로수용소』 등이 있다. 이 소설에서 포로수용소는 이념을 달리한 포로들 간의 생존 투쟁 현장이며,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표본지였으며, 미소양국의 대립된 이념 갈등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포로에 대한 연구는 차민기, 『포로수용소 소설에 나타나는 ‘포로 체험’의 기억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48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서은주, 『한국전쟁의 기억과 글쓰기-거제도 포로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12, 한국작문학회, 2011. 등 외)

32) 장세진, 『은유로서의 포로: 수용소의 삶과 ‘적/동지’의 구별정치- 한국전쟁 포로들의 UN군 관리 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16면.

이 논문에서 포로의 체험적 서사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1) 포로들은 국제법과 UN의 권위에 의해 정의된 존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은유적인 의미에서 남한 냉전주체의 원형이었다. 절박한 국민되기의 글쓰기를 행사함으로써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이상적 휴머니즘의 원칙이 냉전의 현실정치 논리 속에서 굴절되고 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 포로들의 시점을 취한 텍스트들은 재현 작용 특유의 역량을 통해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이후 국제법에 의한 또 다른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중립국 송환포로로서의 이명준의 정치적, 법적 지위이다. 석방자로 명명된 이명준은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되면서 유엔의 자원송환정책에서 의해 중립국 인도에 송환 예정 중인 자들 중 한명으로 설정된다. 최인훈의 이명준에 대한 전쟁포로 서사는 전후 미송환전쟁포로 기사를 보고 착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인훈은 1990년 중립국 송환포로였던 주영훈과의 만남에서 대학생 때 신문에서 처음 포로문제를 읽었으며, “왜 북한 송환도 거부하고 남한에 남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발생한 했는지, 이것에 한국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줬다³³⁾고 말한다. 최인훈은 소설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모델이 될 만한 석방포로자의 정보도, 만나볼 도리도 없었다³⁴⁾고 언급하며, 오로지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이명준이 탄생됐다고 설명한다. 이명준이 비록 허구적 인물이지만, 현실에는 주영훈의 서사가 미송환전쟁포로의 역할모델이었던 셈이다.

『광장』에서 이명준은 인민군 중군기자의 신분으로 생포됨으로써 국제법상 포로가 된다. 휴전 협정 시 자원송환정책에 의해 이명준은 자신의 송환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중립국을

33) 『「광장」의 삶을 선택한 전쟁포로 주영훈씨와 작가 최인훈씨의 만남』, 시사저널, 1990.6.17

최인훈은 전쟁포로 이명준의 모델로도 생각될 법한 반공포로로 브라질에 정착한 주영복을 만나서 당시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 포로수용소의 모습, 중립국 인도의 체류경험, 브라질 정착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영복은 인민군 소령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반공포로가 되었고 송환정책에 의해 중립국을 선택, 인도를 거쳐 브라질에 정착한다. 그는 1950년 한국전쟁 중 연합군에 귀순했고 거제도 수용소에 수용, 유엔의 송환정책에 의해 북한, 남한을 선택하지 않는 88명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1954년 2월 귀국하는 인도군과 함께 아우스트리호를 타고 인도에 체류, 1956년 다른 반공포로들과 함께 브라질에 정착하였다.

34) 최인훈, 김치수 대담, 『4.19 정신의 정원을 함께 걷다』,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17면.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립국은 국가명이 아닌 냉전체제에서 국제법상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은 소설에서 판문점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북한군 포로 설득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남북의 잔인한 포로정책, 그러나 둘 중의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 하오. 전해 듣게 된 그 흉한 소식. 아버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얼이 빠져 주저앉을 참에 난데 없이 밧줄이 내려온 것이었다.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 판문점. 설득자들 앞에서처럼 시원하던 일이란 그의 지난날에서 두 번도 없다. 방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다섯명. (중략)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톡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중략)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당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³⁵⁾

‘중립국’은 교전국의 대립관계에서 어느 쪽과도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로 국제정치의 역학적 구조 하에 탄생된, 냉전체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국가 형태이다. 중립국은 송환국가를 선택하지 못했거나, 거부당한 포로의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전쟁에서 미송환포로를 수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소설에서 제시하는 설득장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의해 진행된 북한군 포로 설득장

35) 최인훈, 앞의 책, 187~191면.

의 배치도와 매우 흡사하다. 포로는 세 명의 인도경비병의 호위 아래 북한군 중좌와 소좌(설득자)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고지해야 했고, 읍서버석에는 미국, 한국, 중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위치했으며 또 다른 한쪽에는 중립국인 스위스, 스웨덴, 인도, 체코, 폴란드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그 과정을 감시했다. 그리고 설득장에는 공산 측에 귀환을 거부하는 자의 출구가, 또 반대편에는 공산 측을 희망하는 자의 출구가 위치해 있었다.³⁶⁾ 소설에서 이명준은 자신을 설득하는 공산군 장교에게 “중립국”을 반복해서 외친다. 남한의 S서에서의 경험은 법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정체성이 획득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남한은 선택지에서 제외된다. “인민 정권은 인민의 망치와 낫이 피로 물들여지며 세워진 것이 아니”었고, “전 세계 약소 민족의 해방자이며 영원한 벗인 붉은 군대가 가져다준 선물”이었다는 사실은 이명준에게 중립국 선택에서 중요하게 인식된다. “북조선 인민에게는 주체적인 혁명 체험이 없었다”는 것, 공문으로 명령된 국가 설립이기에 진정한 혁명은 없었던 것이고, “혁명을 팔고 월급을 타는 사람들”, 혁명을 흉내 내는 위선자에 의해 지탱되는 인민 정권 또한 선택지에서 배제된다. 전체주의적인 친공, 반공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윤리적 법적 주체의 존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은 중립국 선택의 주요 요소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명준의 법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중립국”은 냉전체제의 국가이데올로기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됨으로써, 법과 국가의 관계를 재고하는 계기가 된다.

미송환전쟁포로는 냉전이데올로기가 만든 미소양국의 헤게모니의 쟁탈과 국제법의 협약에 의해 탄생된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광장』에서 이명준은 인민군 포로로 생포되고 자국으로의 송환을 선택하지 않는 미송환전쟁포로로 전략함으로서 국제법의 협약, 조약이라는 법

36) K.S 티마야, 라윤도 역, 『판문점일기』, 소나무, 1993, 215면.

의 심판대에 놓이게 된다. 포로는 국제협약에 의해 인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은 존재이다. 근대 이전 생포된 적군은 살해를 당하거나 노예로 취급되었으나, 근대 이후 그들은 포로로 명명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을 한시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국제적십자사는 전쟁 발발 후 남북한에 전문을 보내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 제3조의 포로 대우에 관한 인도적 원리를 따를 것을 통보했고, 신성모 국방장관이 포로 심문센터를 방문하여 포로를 제네바 협약에 의거해 대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포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네바협정이 근간이 되어 1944년 발간된 『적 포로(TM 19~500, Enemy Prisoners of War)』와 1949년 『포로의 처리FM19~40, Handling Prisoners of War, 1952』 등에 기초³⁷⁾로 하여 UN의 결의에 따라 진행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정부는 제네바협약에 가입되지 않음으로써 포로송환 문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인민군 포로는 1951년 7월 생포자, 투항자, 귀순자 등을 포함하여 17만명에 달했고, 이들은 제네바협약에 의한 자원송환원칙이 유엔총회(1952.12)에서 채택되면서 자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 북한, 남한(대만)을 선택하지 않은 포로들이 생겨났고, 1953년 휴전회담에서 합의에 따라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 양측은 각각 무사히 송환을 원하는 모든 포로를 2개월 내에 송환한다.
2. 중립국감시위원단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무장 지대 내에 설치한다.
3.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한 본국 파견원의 설득은 90일 동안으로 한다.
4. 포로들이 인도군(印度軍)의 보호를 받고 있는 30일 동안에 그때까지도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

37)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도서출판 선인, 2010, 65-70면.

한 회담을 개최한다.

5. 이 기간이 끝난 때에도 아무 결정이 없는 포로는 민간인으로 석방된다.

6.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제적십자는 피석방자들에게 새로운 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협조한다.³⁸⁾

중립국 송환위원회와 유엔에서는 미송환포로들에 대한 세부적인 협약을 위와 같이 제시했다. 미송환포로들은 남한, 북한, 대만에 정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고, 그들은 이들 나라로의 정착을 거부함으로써 중립국 정부의 선택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포로들에게 대한민국(대만), 북한(중국), 제 3국이라는 3가지 선택지가 동시에 주어진 경우는 없었고, 선택지를 지워나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제 3국이었다. 북한과 남한을 선택하지 않은 제 3국행 포로는 총 88명(중국군 12명, 북한군 74명, 한국군 2명)이었다. 이들은 1954년 2월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는 인도군 1,600명과 함께 영국함대 아스투리아스호를 타고 인천항을 떠나 인도 마드라스로 향했다.³⁹⁾ 그러나 이 포로들은 송환국이 미지정된

38) 김민서, 박지현, 『현행 1949년 제네바협약과 대한민국- 6.25 한국전쟁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9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09, 82면.

39) 이선우,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의 발생과 성격』, 『역사와 현실』 90호, 327-337면. 참조

한국전쟁 후 포로문제에서 북한은 제네바협약에 의해 포로의 자동송환, 전원 대 전원 교환 등을 요구했지만, 일괄적 송환이 미국의 심리전에 손상을 입힐 것이 우려되면서 송환방법이 문제시 되었다. 포로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친공 포로, 반공포로들 간의 살육전이 발생되었고, 포로들 간의 갈등이 극대화되었다. 1953.6.8 중립국송환위원회 관련 협정에 의해 송환작업이 시작되었고, 최종적으로 88명이 중립국을 선택하였다. 한국정부에서는 이들을 중립국이 아닌 제3국행 포로로 분류했고, 시대와 국가관에 따라 포로들의 정체성도 달라졌다. 중립국행 88명의 포로들은 인도에 도착한 이후, 1954년 4월 멕시코 정부가 자국 정착을 희망하는 포로를 받아들일 용의를 표명하자 대다수 포로들이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과테말라의 정변으로 인한 난민의 발생으로 멕시코는 결정을 번복했다.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은 공산국가 군인이었던 이들의 수용

상태로 인도로 이송이 되었고, 1954년 2월 21일 인도에 도착한 후에도 이들을 받아주겠다는 중립국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전 협정에는 기본적인 절차만을 언급할 뿐 포로들을 책임질 당국과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이송된 후 2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포로들의 수용을 확정지었다.⁴⁰⁾ 그때까지 포로들은 국적이 없는 난민의 신세였다.

유엔 주도의 자원송환정책은 포로에게 송환의 자유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포로들은 자신이 귀속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피송환권 행사를 거부하고 남한과 북한, 또는 한반도 외부로 전신하여 귀속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국가’란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산물일 수 있음을 전제했을 때 가능⁴¹⁾한 것이다. 포로는 국제법상 국가선택의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것은 제네바협약에 의한 조치였다. 포로는 유엔, 적십자국제위원회(ICRC), 중립국송환 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등의 초국가적 기구에 의해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았고, 제네바협약, 포로교환협정, 휴전협정 등의 국제법에 의해 최소한의 인권을 부여받았으나, 본질적으로 포로는 전쟁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태된 존재로서 적국의 범도 자국의 법체계에서도 제외된 자로 명명될 수밖에 없다.

소설에서 석방자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국가명은 서술되지 않는다. 당시 현실적으로 석방자 수용을 승인한 국가는 중립국 인도뿐이었고, 미국, 일본, 브라질 등에서는 거부함으로써 이들은 제 3국의

을 애초에 거절한 상태였고, 이들을 받아줄 국가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들은 중립국의 포기하고 북조선에 가든지 인도에 남든지 하나를 선택할 것을 종용받기도 했다. 1962년 현재 인도8명, 브라질 45명, 아르헨티나 9명, 북한 6명, 남한 3명, 미국6명, 캐나다1명으로 확인되었다.

40) 이선우, 앞의 논문, 346면.

41) 김혜인,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8집, 상허학회, 2016, 54면.

승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석방자들은 중간 기착지로서 인도에 체류해야 했고 국제사회에서 배제된 채 무국적자로 일정 기간을 보내야 했다. 타고르호를 타고 인도로 향하는 석방자들은 모두 국제법상의 포로의 신분으로 예외상태에 속한 자들이었던 셈이다. 타고르호의 선원과 석방자들은 이명준의 초점화에 의해 제시되는데, 특히 한 방에 같이 기거하는 박은 주요하게 서술된다. 박은 함흥에서 교원 노릇을 한 사람으로 “모가 진 얼굴에 즐린 듯한 가는 눈을 가진 젊은이로 지친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면서, 이명준은 박에게서 소부르주아적 근성을 발견하게 된다. 냉소적이며 석방자들과 거리감을 유지하는 박은 석방자들을 표상하는 인물로 제시되고, 이명준과 동일시된다. 석방자들은 한 곳으로 몰리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긴장과 불안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삶에 대한 두려움은 홍콩에서 집단적 폭력행위로 표출된다.

그 소리를 따라 뺏간으로 옮긴다. 31명이 들어서니 방 안은 빼곡하다. 안쪽으로 명준과 김이 벽에 기대서고 바로 앞 두어 줄은 마루에 앉고, 나머지는 문 가까이까지 밀려서 둘러선다. 앉은 사람과 선 사람들의 눈알들이, 명준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중략) 명준은 둘러본다. 말을 해서 알아들을 얼굴들이 아니다. 그는 언젠가 한번 이런 얼굴들이 자기를 쏘아보고 있던 것을 떠올린다. 그렇지 노동신문사 편집실에 있던 무렵, 그 ‘꿀호즈 기사’ 때문에 자아비판을 한 날 저녁, 그를 지켜보던 편집장을 비롯 세 사람의 동료들이 꼭 이런 눈이었지. 그때 그는 슬픈 ‘눈치’를 깨달으면서 무릎을 꿇었다. 지금 이들도 나한테 무릎꿇기를 들이대고 있다.⁴²⁾

타고르호에서의 사건은 인천을 출발하고 사흘째 홍콩에 도착하여 석방자들이 하선을 요청하면서 시작된다. 석방자들은 선장과 교

42) 최인훈, 앞의 책, 10-11면.

섭하기를 요구하지만, 이명준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물리적인 폭력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선실의 좁은 방에서 이명준은 석방자 대표로서 하선요청을 하라는 강압적 지시를 받는다. 목적지가 인도였기에 중간 하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것은 규율에 어긋난 행위이기에 이명준은 요구를 거절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명준은 31명의 석방자들과 대치하게 되고, 이들의 시선에 의해 자아비판의 대상으로 세워진다. 국가의 법이 지배되지 않는 장소에서,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 난민 신분인 석방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자아비판은 북에서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전체주의적 법이 존속하는 장소에서의 법적 주체의 무력함이 자아비판으로 인지되었다면, 타고르호에서의 상황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법의 공백상태에서 행해진다. 초국가적 공간인 배에서 예외상태에 있는 석방자들은 실제 없는 법에 의해 지배된다. 명문화된 법이 아닌 무력적 권위의 힘은 여기에서 '총'으로 환기된다. 법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국민국가의 필수적 제도임에도, 어느 국가의 법도 적용되지 않는 무법적 공간의 타고르호는 또 다른 차원의 무력이라는 법에 의해 통제된다. 시민적 삶이 보장되지 않는 무력 앞에서의 경험은 중립국에서의 삶의 일단을 사유하는 경로로 의미화 된다.

『광장』은 이명준의 죽음으로 중립국에 도착하지 못한 채 종결된다. 이명준이 인식하는 중립국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법적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이다. 소설에서는 이명준이 상상하는 중립국에서의 삶을 서술하고 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

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원장 선생이 나올 때와 돌아갈 때는 일어서서 경례를 한다. (중략) 또는 도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망루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소방서 불지기는 어떤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도회 경치는 삶의 터이자 노래일 거다. 그 노래가 곧 삶이 된다. (중략) 또 극장 매표원은 어떻게. 돈을 디미는 손을 보고, 일자리며 나이며 틀림없이 알아맞히기에 이골이 날 즈음, 표판을 자동식으로 하자는 소리가 나온다. 나는 전국 표판이 일꾼들의 앞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들었다 놓는다. (중략) 이런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중립국을 골랐다. 43)

중립국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부분은 소설의 말미에 갈매기의 존재를 알기 바로 직전에 서술된다. 수위실 속에서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병원문지기, 도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망루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소방서 불지기, 돈을 디미는 손을 보고, 일자리며 나이며 틀림없이 알아맞히기에 이골이 난 극장매표원은 중립국에서의 이명준의 삶으로 연상된다. 주체로서의 삶이 거세된 곳인 동시에 소시민의 속물적인 삶을 사는 곳, 흡사 진공의 지구상에 존속하지 않은 상상 국가의 모습으로 제시된다. 여기에서 중립국은 타자와의 소통을 거부한 자기 속박을 지향하는 공간이며,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탈국가적인 공간, 타자의 삶을 관망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공간으로 상상된다. 이것은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의 상태, 법의 구속이 없는 무법의 상태인 난민의 존재론인 동시에 예외적인 상태를 스스로 자원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이명준은 “광장에서 졌을 때 사람은 동굴로 물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통

43) 최인훈, 앞의 책, 192~196면.

해 중립국 대신 자신의 동굴을 선택한다. 어미 새와 아기 새가 있는 바다의 푸른 광장이 이명훈의 동굴이었던 것이고, 이것은 죽음으로 귀결된다. 정의에 의한 법적 인간으로서의 존치는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지 않았고, 미송환전쟁포로의 국제법에 의한 비결정적인 자기 존재는 결국 중립국조차 거부하고 환상의 자기물각의 상태인 자살을 선택한다.

이러한 법에 대한 사유는 법에 복종하는 것이 선이며, 선이란 무조건적인 법의 복종이라는 근대 법에 대한 사유의 거부로 보여진다. 칸트는 플라톤의 고전적 법의 사유, 즉 선을 위한 부차적인 수단이 법이며, 법은 최상의 원리인 선을 위해 존재한다고 것을 비판하며, 근대국가에서 법이 선의 이차적인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하나의 삶의 준칙으로 고정된다는 사실을 언급한다.⁴⁴⁾ 법 자체가 진리라기보다는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을 도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법에 규율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법에 의해 지배받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라는 카프카의 법 인식은 여기에서도 유효하다. 법의 판결이 실행되는 공동체의 인정과 심판을 받는 자의 전면적 수용과 복종이야말로 법을 지탱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인 것이다.⁴⁵⁾ 『광장』에서는 이러한 법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냉전체제의 이념적 대립에서 배태되는 법적 정의의 무위성 대한 의문은 죽음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광장』은 냉전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법제도의 무위성, 불완전한 법의 존재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소설은 법의 폭력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했던 한 인간의 서사이기에 인민군 포로, 미송환 포로가 아닌 '석방자'로 명명되고 있다. 여기에서의 석방자는 현실적

44) 서동욱, 「들뢰즈의 법 개념」, 『문학과 사회』 1997.11월호, 문학과 지성사, 1997, 1749면

45) 김명주, 앞의 논문, 108면.

법적 체계에서의 놓여남인 동시에 국가조직에서의 석방이며, 타자적 존재에서의 석방을 의미한다. 이에 『광장』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적 제도, 법적 장치가 근대 시민의 존립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4.19와 연계된다. 국가-법-폭력의 도식은 법을 선으로 정의 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 법이 갖는 국가주의적 폭력의 상황을 의미한다. 법적 주체로서의 윤리적 시민의 삶은 국가 안에서, 탈국가적인 상황에서도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은 제 2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로 보여진다. 민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 과 법의 윤리성, 법적 정의의 쟁취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소설은 시민과 법의 관계망을 환기하고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광장』은 인간의 존재론에 기초한 법의 기원에 대해 묻는 텍스트이다. 권력의 강제권과 법의 절대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법 실증주의적 관점은 이 소설에서 의심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숭상하는 전후의 정치적 상황은 이 소설에서 법 주체 성립의 불가능성과 민권의 존립을 의심케 한다. 냉전체제에서 법적 주체로서의 시민 정체성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것은 법의 권위 위에 정치 이데올로기가 군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법적 권위가 권력의 힘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서 『광장』은 시민이 되고자 했지만 미충 환포로로 전략하여 국가 선택을 거부하는 한 인간의 존재론적 정위를 보여준다.

1950년대 현실에서 법질서의 혼란과 국가보안법의 강압적 반공 정치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혁명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는 아이러니적인 상황을 연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

에서 개인의 도덕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거부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양심들이 하나로 모여서 경쟁의 장에 나와 공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시민불복종과 같은 정치적 의의를 갖추게 된다고 역설한다.⁴⁶⁾ 폭력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시민의 자기 주체성의 발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시민의 권리와 법 집행자의 권력적 문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공동체의 정의는 시민불복종의 형태로 현현된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이 단일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집단과 집단 행위를 통해 성립되는 행위라는 논의는 4.19의 사회, 역사적 의미를 환기한다.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법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상황에서의 시민불복종의 형태는 양심에 의한 신념의 고수로 또는 집단적으로는 4.19라는 혁명을 이루어내는 기원이 된다. 자유와 권리가 침해하지 않는 정의로운 법제도에 의해 시민의 정체성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4.19의 효과였던 셈이며, 1960년대에 성취해야 할 목표였던 셈이다.

낡은 질서를 저항하고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모색하고자 하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새로운 이미지가 4, 19 이후에 획득되는 시민의 정체성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논의는 유의미하다. 민주주의를 향한 이상과 현실의 화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순과 괴리에 대한 집단적 자각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지평을 창출할 수 있었고, 모순된 현실세계에 대한 각성으로 시민 탄생은 가능했다.⁴⁷⁾

46) 한나 아렌트, 김선옥 역, 『공화국의 위기』, 한길사, 2011.

아렌트는 시민불복종의 행위가 법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논의하며, 시민불복종의 비폭력의 의한 자발적 결사체로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결사체는 단기적인 목적들을 추구하고는 그 목적이 달성된 이후 사라지는 특별조직이며, 이 같은 단기 특별조직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동료의식과 연대의식이 자발적 결사체가 함께 행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분석한다.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이론은 미국 건국혁명과 헌법이라는 역사적 실재를 중심으로 법의 정신이라는 특정한 목적과 자발적 결사체라는 구체적 현상을 연결 짓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7) 정상호,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림대학교출판부, 2013, 151면.

4.19는 근본적인 헌법수호, 법질서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수호 의지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경험공동체에 의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달성될 수 있었다. 즉, 근대 시민의 탄생에서 혁명은 필수불가결한 배후였던 셈이다. 이에 『광장』은 법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정체성 형성이 냉전의 국제정세와 반공체제라는 전후 현실에서는 가능할 수 없고, 시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각성과 자발적 지성의 활동에 의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장』이 현실적 법제도와 시민적 정체성의 불일치를 보여주면서 송환포로의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면, 이후 최인훈 소설들은 정치, 사회적인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대신 관념적인 나르시즘으로 경사된다. 이것은 아마도 혁명의 열매가 익어가기 전에 발발한 5.16 쿠데타의 영향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쿠데타로 인해 혁명의 의미가 폭력에 의해 거세되고,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군사정권이 안착되는 ‘예외상태’는 일상에서 지속된 것이 사실인 바, 이와 같은 “삶에서 어떤 정신세계가 열렸다가 갑자기 닫혀버린 것”⁴⁸⁾에 대한 경험은 이전과는 다른 문학적 형태로 나아가게 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인훈 역시 『광장』 이후 모더니즘의 미적 주체 구성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1960년대 문학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겠다.

48) 권보드래, 천정환,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85면.

■ 참고문헌 ■

1. 자료

최인훈, 『광장/구운몽』, 문학과 지성사, 2002.

최인훈, 『광장/구운몽』, 문학과 지성사, 2015.

최인훈, 『회색인』, 문학과 지성사, 2016.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2. 논문 및 단행본

권보드래, 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김동춘, 『시민권과 시민성- 국가, 민족, 가족을 넘어서』, 『서강인문논총』 37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46면

김명주, 『국가-법- 폭력에 대한하는 아이러니와 유머의 정치학- 들뢰즈의 ‘문학철학’에 나타난 법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1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99-127면.

김민서, 박지현, 『현행 1949년 제네바협약과 대한민국- 6.25 한국전쟁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9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09, 73-99면.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김윤식, 『현대문학과 의 대화』, 서울대출판부, 1994.

김윤식, 정호웅, 『현대소설사』, 예하, 1993.

김병익, 『다시 읽는 『광장』』, 문학과지성사, 2010.

김혜인,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8집, 상허학회, 2016, 49-88면.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 여름호, 창작과 비평사, 1969.

서동욱, 『들뢰즈의 법 개념』, 『문학과 사회』 1997.11월호, 문학과 지성사, 1997.

- 설혜경,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법과 위반의 욕망』, 『현대소설연구』 45호, 현대소설학회, 2010, 205~236면.
- 우찬제, 이광호역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 이선우,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의 발생과 성격』, 『역사와 현실』 90호, 317-350면.
- 이평진, 『1960년대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범의식’연구』, 『인문논총』 34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33-51면.
- 장동진, 김범석, 『입헌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 존 롤스와 한나 아렌트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6집4호, 21세기 정치학회, 2016, 97-124면.
- 장세진, 『은유로서의 포로: 수용소의 삶과 ‘적/동지’의 구별정치- 한국전쟁 포로들의 UN군 관리 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9-61면.
- 전해정, 『법감정(法感情)의 인식론적 가능성 연구』, 『법학논총』 26,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85-209면.
- 정상호,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림대학교출판부, 2013.
-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도서출판 선인, 2010.
- 르돌프 폰 예링, 윤철홍 옮김, 『권리를 위한 투쟁』, 책세상, 2009.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외』, 길, 2008.
- 아르노그, 민혜숙 옮김, 『법, 정의, 국가』, 동문선, 2003.
- 자크 데리다, 진태원 옮김, 『법의 힘』, 문학과 지성사, 2004.
- 질 들뢰즈, 서동욱 역, 『칸트의 비판철학』, 민음사, 2006.
- 한나 아렌트, 김선옥 역, 『공화국의 위기』, 한길사, 2011.
- K.S 티마야, 라운도 역, 『관문점일기』, 소나무,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Consciousness
and Civic Ethics Appeared in Choi In-hoon's
『The Square』

Hong, Sun-A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the legal consciousness, civic identity, and ethics in Choi In-hoon's novel 『The Square』. 『The Square』 shows the form of disobedience to the modern state system, in which the protagonist rejects to choose the state when he is downgraded to be a repatriation prisoner although he yearns to be a citize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legitimacy of the democracy and the legal authority are threatened by political ideology. In the novel, the loss of status as a legal subject, a right of citizen, by the violence in the S police station of South Korea become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a contradiction to the nationalistic legal system. And the self-criticism of self-punishment disguised as totalitarianism in the North is perceived as an agent of hegemonic violence by showing the process of punishment without guilt by a similar legal apparatus. The protagonist realizes that it is impossible to exist as a legal human being in reality, which is a decisive reason for choosing a neutral nation.

The status of repatriation prisoner is presented as an “exceptional state’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law which defines the nationality of



those involved as uncertain. Here, the selection of a neutral nation is a criticism of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Cold War and the anti-communism, which is a continuation of the scheme of state - law - violence, as well as an allegory for the Second Republic. 『The Square』 shows that the formation of civic identity as a legal subject cannot be possible in the postwar realities of the Cold War and anti-communist regime, and that citizenship can only be accomplished by the awareness of the community as a whole and the activities of voluntary intellect rather than as an individual problem.

Therefore, 『The Square』 is a narrative of a human being who wants to escape from the law of inaction that the protagonist realizes as a legal system tied to the Cold War ideology. The novel emphasizes the expansion of the perception of civil rights, the ethics of the law, and the necessity of legal justice, evoking the inevitability of a revolution. 『The Square』 is linked to the 4.19 Revolution because it shows that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legal apparatus guarantee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are the conditions for the existence of modern citizens. The fact that citizens' identity should be constituted by a just legal system that does not infringe on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is significant in the reality of 4.19 Revolution.

Key words: Legal Consciousness, citizens, Cold War ideology, 4.19 Revolution, anti-communism, exceptional state, neutral nation

투 고 일 : 2017년 7월 31일 심 사 일 : 2017년 8월 1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